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9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금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6월 9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보건소장 소예경)

가. 제안이유

○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갑상선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상선 기능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고, 그 밖의 각종 검사와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항목 삭제(안 제2조 제2항 제2호, 제4조 삭제, 별표)

○ 갑상선 기능검사 항목 추가 및 수가 규정 변경(안 별표)

○ 수수료 및 진료비, 검사 관련 항목 일부 삭제·현행화(안 제3조제2항 제7호, 제5조,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,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와 수수료 및 진료비 기준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서비스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신설하고 의료수가를 현행화함으로써 구민에게 다양한 검진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

○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개정사항이 시행된지 일정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일부 항목 변경내역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보건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향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